



CDTFA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캘리포니아주 내 담배 및 토 바코 제품 판매

소매업체 면허 요건

담배의 정의

"담배(Cigarette)"¹의 정의는 모든 크기와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흡연용으로 말아진 제품으로,

- 토바코를 원재료로 제조됨(가향 또는 무가향)
- 종이 또는 기타 재료로 포장되어 있음

예외: 토바코로 감싸져 있거나, 포장의 대부분이 토바코로 구성된 제품(예: 시가)은 1,000개비당 무게가 3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담배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해당 제품은 토바코 제품으로 간주됩니다.

토바코 제품의 정의

"토바코(Tobacco)" 제품²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모든 형태의 시가(리틀 시가 포함).
2. 흡연 또는 파이프 담배(물담배 포함), 씹는 담배, 스너프.
3. 인체 섭취용 토바코 함유, 추출 제품 또는 이를 사용해 제조한 모든 제품.
4. 전달 장치 또는 시스템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고, 인체 섭취용으로 판매되는 모든 니코틴 함유, 추출 제품 이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예: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 액상).
5. 전자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되어 단일 가격으로 판매되는 모든 기기 또는 전달 시스템.
6. 니코틴과 함께 판매될 때 기기 작동 중에 사용되는 전자담배의 모든 구성 요소, 부품 또는 액세서리(예: 니코틴이 함유되어 단일 가격으로 판매되는 기기 작동을 위해 사용되는 배터리).

또한 캘리포니아주 주법은 담배 및 토바코 제품의 소매 면허 목적으로 토바코 제품³에 다음 제품이 포함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인체 섭취용 토바코 또는 니코틴 함유, 추출 또는 이를 사용해 제조된 제품.
2. 니코틴 또는 기화된 액상을 제공하는 전자 기기.
3. 토바코 제품의 구성품, 부품 또는 액세서리(별도 판매 여부 무관).

예를 들면 전자담배, 무화기, 베이핑 탱크 또는 모드 기기, 전자 액상 등이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담배, 식품⁴ 또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금연 제품 또는 기타 치료 목적으로 판매하도록 승인한 제품(예: 니코틴 패치)은 토바코 제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¹ 조세법(R&TC) 섹션 30003.

² R&TC 섹션 30121 및 30131.1.

³ 사업 및 전문업법(B&PC) 섹션 22950.5(d).

⁴ R&TC 섹션 6359.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체 면허를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대상

캘리포니아에서 담배 및 토바코 제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체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다음 필수요건이 적용됩니다.

- 캘리포니아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유통업체 또는 도매업체로부터 세금이 납부된 제품을 구매하기 전, 그리고 소비자에게 담배 또는 기타 담배 제품을 소매 판매하기 전 유효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2003년 담배 및 토바코 인허가법[인허가법]).⁵
-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소매 판매하는 각 지점 또는 자판기마다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각 소매업장에서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면허를 게시합니다.
- 최초 면허 신청 수수료 및 지점별 연간 면허 갱신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참고 사항: 소매업체는 인허가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타주 판매자로부터 비과세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유통업체의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소매업체는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다른 소매업체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른 소매업체에게 판매하려면 유통업체 또는 도매업체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수수료는 www.cdtfa.ca.gov/taxes-and-fees/special-taxes-and-fees-tax-rates/#cigaretteli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배 및 토바코 제품에는 담배 및 토바코 제품세법⁶에 따라 해당 주에서 유통 시 부과되는 소비세가 적용됩니다. 물품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www.cdtfa.ca.gov/formspubs/all-forms-and-publications.htm에서 간행물 93, *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Taxes*(담배 및 토바코 제품세)를 참조하세요.

캘리포니아 전자 담배 물품세(California Electronic Cigarette Excise Tax)

전자담배 소매업체는 니코틴이 포함되거나 니코틴과 함께 판매되는 전자담배의 소매 판매가의 12.5%(12.50%) 비율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전자담배 소비세(CECET)⁷를 판매 시점에 구매자(캘리포니아주 소비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CECET의 징수는 판매세 및 사용세에 추가로 징수됩니다.

니코틴이 함유되거나 니코틴과 함께 판매되는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CECET 허가증(계정)을 등록합니다.
- 간판이나 게시물 등 표시되는 모든 가격 마케팅에 CECET 금액을 포함합니다.
- 판매 시 니코틴이 함유되거나 니코틴과 함께 판매된 전자담배 소매 판매가의 12.5%(12.50%)의 세율로 구매자로부터 CECET를 징수합니다.
- 각 전자담배 소매 판매 시 지불한 금액과 CECET이 별도로 명시된 영수증 또는 기타 문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합니다.

⁵ B&PC 조항 8.6(섹션 22970부터 시작).

⁶ R&TC 2부 13절(섹션 30001부터 시작).

⁷ R&TC 2부 13.6절(섹션 31000부터 시작).

- 전자적 방식으로 CECET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물품세를 납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주 전자담배 물품세(Tax Guide for California Electronic Cigarette Excise Tax) 페이지(www.cdtfa.ca.gov/taxes-and-fees/california-electronic-cigarette-excise-tax/)에서 확인하세요.

이동식 판매업체가 담배 및 기타 토바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매업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동식 판매점'은 소매점 위치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케이터링 트럭, 점심 판매용 카트 또는 기타 이동식 시설에서 운영되는 업체는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체 면허 취득 자격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캘리포니아주에서 트럭, 카트 또는 기타 이동식 시설로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면허 신청 또는 갱신은 어떻게 합니까?

면허 신청 또는 갱신은 온라인 서비스(onlineservices.cdtfa.ca.gov/_/_/)를 이용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주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 30분~오후 5시에(태평양 표준시) 1-800-400-7115(TTY: 711)로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만료일은 언제입니까?

소매업체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양도 불가하고 일할 계산될 수 없으며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다른 소매업장을 추가하는 경우 첫 번째 소매업장에 대한 면허를 취득한 달부터 12개월을 기준으로 해당 업장에 대한 면허가 갱신됩니다.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이메일과 서면으로 갱신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체 면허를 유지하려면 갱신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서와 함께 갱신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적시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가 만료됩니다. 유효한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체 면허 없이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면허 또는 갱신 비용을 어떻게 납부합니까?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온라인에서 바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cdtfa.ca.gov/services/make-a-payment.htm)를 참조하세요.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소매업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담배 및 토바코 제품 면허 요건은 CDTFA에서 발급하는 기타 허가증 및 면허에 추가로 요구됩니다.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체 면허를 발급받고, 매년 면허를 갱신하려면 유효한 캘리포니아주 판매자 허가증을 신청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주 면허는 인허가법에 따라 요구됩니다. 해당 법은 귀하가 취득해야 할 수 있는 현지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체 면허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 관할권에서는 지역 내 담배 소매업체의

수를 제한하거나 업체 집중도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체 면허를 신청 또는 갱신하기 전에 CDTFA의 요건보다 더 제한적일 수 있는 지역 담배 토바코 관련 발급 요건이 있는지 지역 보건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매업체의 책임

- 유효한 판매자 허가증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체 면허를 유지합니다.
- 적시에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고 갱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각 소매업장의 잘 보이는 위치에 면허를 게시합니다.
- 캘리포니아주 세금 스탬프가 부착된 담배 및 세금이 납부된 담배 제품만 구매합니다.
- 담배 및 토바코 제품에 대한 구매 송장을 4년간 보관합니다.
 - 담배 및 토바코 제품 구매 송장을 구매일로부터 최소 1년 동안 각 허가된 장소에 완전하고 판독 가능한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송장은 재고와 동일한 위치에 보관해야 합니다.
- 요청 시 CDTFA 대리인 또는 법 집행관이 담배 및 토바코 제품 구매 송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법무장관실의 캘리포니아주 담배 디렉토리(oag.ca.gov/tobacco/directory)에 명시된 대로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가 승인된 담배 및 롤링토바코(RYO)만 구매 및 판매합니다.
-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의 무가향 담배 목록(UTL)에 명시된 무가향 담배 제품만 구매 및 판매합니다.
- 가향 담배, 가향 토바코 제품 또는 토바코 제품 가향 강화제를 구매, 소지, 보관, 소유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담배 및 토바코 제품 판매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는 대마초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소매업체의 책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DTFA에서 제공하는 담배 및 토바코 제품 판매 소매업체용 [세미나](#) 강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고 처분 기간. 유통업체 또는 도매업체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이 토바코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제품군을 디렉토리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 인가된 소매업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인가된 소매업체는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계열이 목록에서 삭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금 스탬프가 찍힌 담배 또는 세금을 납부한 RYO를 소지, 운송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60일간의 재고 처분 기간이 지나면 해당 담배와 RYO 담배는 압수 및 폐기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구매 송장 요건. 유통업체 또는 도매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송장은 판독 가능하고, 아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구매한 유통업체 또는 도매업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면허 번호.
- 송장에 기재된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에 대해 유통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제품세 금액.

참고 사항: 인가된 소매업체 또는 제조업체이자 인가된 유통업체는 납부해야 하는 담배 및 토바코 제품세 금액을 제공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All California cigarette and tobacco product taxes are included in the total amount of this invoice(모든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세금은 이 송장의 총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구매한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의 항목별 목록.
 - 구매한 담배에는 브랜드 및 스타일 이름, 맛, 필터, 해당되는 경우 포장, 판매된 상자 또는 갑 수, 판매 가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구매한 담배 제품에는 브랜드, 종류(파이프, 시가, RYO 담배 등), 향, 포장(파우치, 통, 박스 등), 판매 수량, 판매 가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귀하의 이름, 인가된 매장 주소,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체 면허 번호.
-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구매한 날짜.

매장 간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이전. 일반적으로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법인 산하에 여러 소매점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전과 관련된 위치가 동일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 재고의 일부를 한 소매점에서 다른 소매점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시마다 아래의 모든 정보가 포함된 이전 기록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를 준비합니다.
 - 이전 날짜.
 - 제품을 이전하는 소매업체의 이름, 주소 및 최초 구매가 이루어진 면허 번호.
 - 제품을 이전받는 소매업체의 이름, 주소 및 제품이 이전되는 면허 번호.
 - 공급업체(유통업체 또는 도매업체)의 이름과 면허 번호, 구매 송장 번호, 최초 구매 날짜.
 - 공급업체, 구매 날짜, 구매 송장별로 구분된 판독 가능한 이전 제품 목록 및 상세 설명, 이전 수량.
- 원본 이전 기록 또는 유사한 서류를 구매일로부터 4년간 보관합니다.
- 이전일로부터 최소 1년간 이전과 관련된 두 지점에 이전 기록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및 구매 송장 사본을 보관합니다.
- 조사 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전 기록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와 이전된 제품에 대한 구매 송장 사본을 제공합니다.

집행

면허 게시.⁸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판매하는 각 소매점에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면허를 게시하지 않으면 적발될 때마다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록.⁹ 담배 및 토바코 제품의 재판매 재고에 대한 구매 송장을 포함하여 판독 가능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기록을 4년 동안 보관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송장은 구매일로부터 최소 1년 동안 소매점에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을 유지하지 않고 CDTFA 직원 또는 법 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록을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하는 경범죄 소환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⁸ B&PC 섹션 22974.5.

⁹ B&PC 섹션 22974 및 22981.

조사.¹⁰ CDTFA 직원은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이 판매, 생산 또는 보관되는 모든 지점 또는 불법 활동의 증거가 있는 모든 현장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CDTFA 직원 및 법 집행관은 소매점을 조사하여 세금 스탬프가 없거나 타주 스탬프 또는 위조 스탬프가 부착된 담배를 포함하여 가향 담배 또는 비과세 담배 및 토바코 제품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담배, 비과세 토바코 제품, 가향 담배, 가향 토바코 제품 또는 토바코 제품 가향 강화제를 소지한 소매업체는 면허 정지 등의 벌금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및 귀하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publication 152, Cigarette and Tobacco Product Inspections](#)([한국어 버전: 간행물 152-K](#),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조사)를 참조하고, *What to Know About Your 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Inspection*(담배 및 토바코 제품 조사 관련 정보) 동영상 (www.youtube.com/watch?v=2k6Dgtdxo8Q)을 시청하세요.

불법 구매.¹¹ 소매업체가 다른 소매업체나 인허가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판매자로부터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구매할 경우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압수당하고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벌금형,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유통업체 또는 도매업체의 면허는 웹사이트(www.cdtfa.ca.gov/taxes-and-fees/cigarette-licensees.ht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판매.¹¹ 판매자 허가증 및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 면허 없이 또는 인허가법에 따라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소매업자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경우, CDTFA 직원 또는 법 집행 기관이 귀하가 소지한 모든 담배 및 토바코 제품을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된 제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가향 담배, 가향 토바코 제품 및 토바코 제품 가향 강화제의 소매 판매 금지.¹²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가향 담배 제품 금지법(FTPB)은 소매업체(및 그 직원 또는 대리인 포함)가 가향 담배, 가향 토바코 제품 및 토바코 제품 가향 강화제를 판매, 제공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CDTFA 직원 또는 법 집행 기관은 모든 가향 담배, 가향 토바코 제품 또는 토바코 제품 가향 강화제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제품은 국가에 몰수된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 처리됩니다. 압수된 패키지 1개당 \$50의 민사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습 위반 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¹⁰ R&TC [섹션 30435](#) 및 B&PC [섹션 22980, 22981, 22974.2](#) 및 [22978.3](#).

¹¹ B&PC [섹션 22974.7, 22980.1](#) 및 [22981](#).

¹²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04559.5](#) 및 B&PC [섹션 22974.2](#).

면허 정지 또는 취소.¹³ 담배 및 토바코 제품 면허는 면허 정지 기간 중 또는 면허 취소 효력 발생일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유효한 면허 없이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판매, 선물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면허가 정지된 소매업체는 정지 기간 동안 위반이 발생한 매장에 **면허 정지 공지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소매업체는 취소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동안 취소 대상 매장에 **면허 취소 공지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판매 정지 기간 중 또는 취소 효력 발생일 이후에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계속 판매하거나 선물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소지하고 있는 모든 담배 및 토바코 제품을 압수 및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위반 건당 \$1,000의 민사 벌금이 부과됩니다.

- 요구된 바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공지문을 게시하지 않음.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공지문 변경함.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공지문을 필수 게시 기간이 지나기 전 제거함.
- 면허 정지 기간 또는 면허 취소 이후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판매용으로 진열함.

¹³ B&PC 섹션 [22980.2](#), [22980.3](#), [22980.4](#), [22980.5](#).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cdtfa.ca.gov)를 방문하거나 고객 서비스 센터(1-800-400-7115, TTY:711)로 전화하여 확인하세요.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태평양 표준시), 공휴일 제외.

납세자 권리 조언자

일반적인 방식(예: 관리자와 통화)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경우 무료 전화 1-888-324-2798로 문의하세요.

참고 사항: 본 간행물은 표지에 명시된 대로 발행일 당시 시행 중인 법률 및 규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법률이나 규정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본 정책과 법률 또는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본 정책이 아닌 법률 및 규정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